

#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19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3. 6.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□ 제안이유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('97. 1. 1시행)됨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의 직명과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관의 직명을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·시행에 따른 충청북도문화예술 진흥위원회조례중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의 직명 변경  
(제2조 제3항)
  - 위원 내무국장 ⇒ 문화관광국장으로
- 다른조례의개정  
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증 기금운용관의 직명 변경(제8조)
  - 기금운용관 내무국장 ⇒ 문화관광국장으로

## □ 근거법령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및 제11조

## □ 기타 참고자료

- 현행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(전문)
- 현행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(전문)

##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 제3항중 “내무국장” 을 “문화관광국장” 으로 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조례의개정)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8조중 “내무국장” 을 “문화관광국장” 으로 한다